

은행 자체 심의 번호 : 2010-C-11 은행 자체 심의일 : 2010.11.17 작성 기준일 : 2011.09.22

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<u>이 설명서</u>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위한 <u>참고자료</u>이며, <u>실제 계약은</u>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특약<u>이 적용</u>됩니다. <u>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이 교부</u>됩니다.

1. 개요 및 특징

□ 이 예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「근로자퇴지급여 보장 법」과 동법 시행력 및 시행규칙에 의거 취급하는 퇴직연금 전용 목적부 정기예금 상품입니다.

2. 이자에 관한 사항

□ 적용이율

• 약정이율(DB(DC/IRA))

(연%, 세전)

계약기간	연이율	연수익률
3개월	3.96(4.40)	_
6개월	4.05(4.50)	_
1년제	4.25(4.70)	4.25(4.70)
2년제	4.42(4.90)	4.33(4.79)
3년제	4.53(5.00)	4.34(4.77)

- ① 상기 이율은 2011.10.04 현재 고시금리입니다.
- ② 신규 시 적용 이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③ 세부 계약 기간별 이율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합니다.

• 우대이율 : 없음

• 중도해지이율 : 4.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• 만기후이율 : 없음

□ 이율결정방식 : 응당일(신규일 및 자동 만기연장일)의 약정이율

•응당일이 없는 경우 : 그 월의 말일

•응당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: 직전 영업일

□ 이자지급 시기·방법: **만기일시지급식**

□ 이자계산방식 : (가입기간별)복리식

3.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

□ 해당 사항 없음

4.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

- □ 만기·중도해지 방법 및 절차: 영업점 방문 신청
 - 중도해지시 이자지급 방법
 - 가. 중도해지시에는 신규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자를 지급합니다. 다만 신규일 및 최종 만기연장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만기연장일 현재 은행계정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.



- 요정시 이사시급망법 ① 신규일~2년 : 신규시 약정이율 적용
- ② 2년~4년: 2년 경과시점에서 게시한 2년제 약정이율
- ③ 4년~중도해지 전일: 4년 경과시점(최종 만기연장일)에서의 은행계정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(경과기간별)
- 나. 전 "가"에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당시 고시된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 약정이율을 적용한다. 단, 자동 만기연장시에는 최종 만기연장일에 약정한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 약정이율을 적용한다.
 - ① 퇴직 등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 -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 -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
 - ④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
- □ 중도해지수수료 : 해당사항없음
- □ 일부중도해지 : 만기일 전일까지 2회이내 가능(신규일 당일은 불가)
 - 다만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일 전일까지 2회이내 일부 중도해지 가능합니다.
 -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일부중도해지 는 일부중도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
5.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

- □ 가입대상 : 퇴직연금 사업자(자산관리기관)
 - •퇴직연금 사업자 :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

록한자를 말합니다.

- □ 계약기간 : 3개월제, 6개월제, 1년제, 2년제, 3년제
 - •이 예금의 만기는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주의 해지요청이 없는 한이자원가 후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.
- □ 가입금액 : 최소 100원이상
- 6.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
 - □ 확정급여형에 운용되는 정기예금
 -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 - □ 확정기여형에 운용되는 정기예금
 -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퇴직계좌 의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, 모든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별로 1 인당 "최고 5 천만원까지" 보호합니다.
- 7. 은행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
 - □ 중도해지시 불이익 :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 받습니다.
- 8. 기타 계약의 주요내용
 - □ 퇴직연금 운용관리시스템에 의해 신규, 지급, 해지 등의 업무 수행 (통장 미사용, 단말거래나 인터넷거래가 불가합니다)
 - □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자동재예치 :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연장
 - □ 계좌분할 : 불가함
 - □ 부가혜택 : 없음
 - □ 예금담보대출 : 불가함
 - □ 양도 및 질권설정 : 불가함
 - □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가입 : 불가

* 본 상품설명서는 고객의 안내를 돕기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은행과 고객간의 계약관계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,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.